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682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26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3,830,000원과 2024. 7. 24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,830,000원과 2023. 8. 24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2013. 11.분부터 2024. 6.분까지 피고가 납부해야 할 차임 중 미납한 금액이 합계

8,383,000원이고, 위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5,000,000원을 공제한 3,830,000원의 지급을

명하므로, 그 부분과 중복되는 2023. 8. 24.부터 2024. 7. 23.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
차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.

판사권세진

별지